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월 28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11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그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